

미군정기의 외국인등록령에 관한 신문기사

- 재일조선인 발행 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

이행화*
mua-winter@hanmail.net

이경규**
lk5120@deu.ac.kr

<目次>

- | | |
|------------------------|----------------------------|
| 1. 들어가며 | 3. 「조련중앙시보(朝連中央時報)」의 관련 기사 |
| 2. 「민단신문(民團新聞)」의 관련 기사 | 4. 나오며 |

主題語: 미군정기(U.S. Occupation of Japan), 재일조선인(Zainichi Korean), 민단신문(Mindan shimbun), 조련중앙시보(Choren chuo shibo), 외국인등록령(The Alien Registration Act)

1. 들어가며

1945년 일본의 패전 직후 그때까지 일본에 살던 200만 명이 넘는 재일조선인은 약 140만이 귀국하고 60만이 일본에 남게 된다. 귀국하지 않고 잔류를 선택하게 된 60만의 재일조선인들에게는 그들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1) 한반도 정세가 불안한 탓도 있었지만, 특히 미군정2) 체제에서의 귀국 조건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남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 연합국 최고사령관 총사령부가 허용한 재일조선인의 반출 가능 재산이 현금 1,000엔 이내, 현물 250파운드로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온갖 모진 수모와 어려움을 견뎌내며 모았던 재산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선뜻 귀국을 선택할 수 없는 불안 요인도 있었다. 이렇게 해서 미군정 체제의 일본에 남게 된 재일조선인은 연합국에 패한 일본인의 처지보다도 못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게다가 일본 사회의 조선인 멸시 또한 전전이나 전후나 별로 달라진 게 없었다. 그 무렵 조선인을

* 동의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연구원

** 동의대학교 인문사회대학 일본어학과 교수, 교신저자

1) 이행화·이경규(2019)「미군정기의 재일조선인 관련 신문기사와 이데올로기」『일본근대학연구』제64집, p.197

2) 미군정기는 1945년 8월부터 1952년 4월까지 연합국 최고사령관 총사령부(GHQ)가 일본을 점령한 시기를 일컫는다.

사회적 혼란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한편, 정치적으로 위협요소로 보는 일본 사회의 현상을 일본 정부가 조장하고 미군정은 그것을 방조하고 있었다. 이렇다 보니 재일조선인은 일자리나 주거공간을 찾아보는데도 일본인에 비해 늘 배제당하거나 힘든 일자리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들은 그들의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 시위 투쟁을 하는 수밖에 없었고 시위하는 과정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당시 조선인들 사이에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운동이 성행했던 것은 일본 정부가 단속 대상으로 포섭하려는 시도가 점차 강화되는 등 조선인의 법적 지위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의식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일본에 남아서 생활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선인들은 자신들을 지켜내고 대변할 수 있는 조직을 결성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나는 게 당연했다.³⁾ 좌파 성향의 재일본조선인연맹(조련)과 우파 성향의 재일조선선거류민단(민단)이 그 대표적인 조직이다. 해방 직후 마소 군정 하의 분할 주둔으로 신탁통치에 대한 좌우익간의 찬반 갈등을 비롯한 한반도의 혼란스러운 상황 못지않게, 재일조선인 사회도 좌파 성향과 우파 성향으로 양분되어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게 된다.⁴⁾

그리고 패전 직후 재일조선인들은 일본의 법 제도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일본은 패전 이후 내국인으로 간주하던 구식민지 조선인들을 외국인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1947년 5월 「외국인등록령」을 공포하면서 조선인과 대만인 등 구식민지 출신자를 외국인으로 취급한다고 선언한 것이다. 한반도 출신으로 일본에 남아있던 60여만 명 재일조선인의 국적을 조선적으로 표시했다.⁵⁾ 이후 1947년 5월 식민지 출신의 재일조선인 관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칙령으로서 외국인등록령을 공포하여 이후 연합국과의 강화조약이 체결되기 이전의 구식민지 출신자들은 모두 외국인으로 취급했고⁶⁾ 외국인 등록과 동시에 의무적으로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하도록 하였다. 특히,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재일조선인들을 미군정의 치안 유지에 불안요소로 작용하는 집단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재일조선인들에게 일본 교육기본법에 따라 교육을 받도록 지침을 내린 것도 미군정이 일본의 내치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치안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불안요소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도

3) 일본의 패전 이후, 일본 각지에서 동포들의 귀국대책, 생활권과 재산권 보호, 실업대책 등을 목표로 하는 수많은 재일조선인 단체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흩어져 있는 단체들의 결속과 중앙통제적인 전국 단위의 조직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4) 이경규(2019) 「미군정기 재일조선인 발행 신문의 문화 기사 고찰」 『일본근대학연구』 제63집, p.104

5) ‘외국인등록령’은 일본국 헌법 시행 전날인 1947년 5월 2일 공포, 시행된 마지막 포츠담 칙령이다. ‘외국인등록령’은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 발표에 따라 1952년 4월 28일 폐지되었다.

6) 1947년 일본정부가 GHQ(연합군 최고사령관 총사령부)의 힘을 빌려 외국인등록령을 반포한 이후 재일조선인은 외국인이 되는 듯 했다. 그런데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를 통해 전범국 지위에서 벗어나 국제무대로 복귀한 일본정부는 예고도 없이 재일조선인들의 외국인등록령을 해제하며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선택권조차 주지 않았다. 재일조선인은 한순간에 난민과 다를 바 없는 무국적자가 됐다.

하나의 이유였다.

이들 재일조선인은 일본의 패전 이후에도 미군정인 연합국 최고사령부와 일본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았다. 미군정은 재일조선인을 독립한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일본 경찰권의 통제를 받는 외국인으로 취급하면서 조선인들의 권리마저 박탈했다. 미군정은 재일조선인의 거주와 귀환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이들을 일제강점기처럼 송환의 대상으로 몰아갔다. 일본 정부는 1947년 외국인등록령을 실시해 재일조선인의 퇴거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리고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를 통해 전범국 지위에서 벗어나 국제무대로 복귀한 일본 정부는 예고도 없이 외국인등록령을 해제하며 일본 국적을 취득할 기회마저도 주지 않았다. 재일조선인은 한순간에 난민과도 같은 무국적자가 되었다.⁷⁾ 이들 조선인들은 자신들의 생활권과 거주권 확보 그리고 외국인으로서의 법적 지위 보장을 미군정 당국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미군정은 재일조선인의 권리 투쟁과 운동을 공산주의 세력의 획책으로 간주하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동조할 뿐이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외국인등록령 실시에 따라 겪게 되는 차별과 멸시 속에서 재일조선인들이 생존권 확보와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어떠한 활동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마이너리티 미디어 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당시의 신문 기사 수집과 검색에는 동의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편 『전후 재일조선인 마이너리티 미디어 해제 및 기사명 색인』을 활용하기로 하였다.⁸⁾ 본 연구에서는 「민단신문(民團新聞)」, 「조련중앙시보(朝連中央時報)」 등 재일조선인 관련 마이너리티 신문에 실린 외국인등록령 관련 기사를 수집하여 이들 미디어 기사의 내용을 분석하고 외국인등록령 이후 재일조선인이 겪게 되는 사회문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민단신문(民團新聞)」의 관련 기사

<표1> 민단신문의 기사일람

발행일	권호	지면정보	기사제목(원문)
1947.06.30	第9号	04頁01段	正しき外国人登録令を要請す 外国人登録令に対する見解

7) 남북으로 나뉜 두 개의 조국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다른 한쪽을 포기해야 했기 때문에 ‘무국적’을 고집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일본에서는 공식적으로 ‘평화조약 국적이탈자’로 칭한다. 미군정 때 외국인 등록령에 의거해 이들을 임시로 ‘조선적’으로 분류, 무국적 외국인으로 등록하게 된다.

8) 이경규 외(2018) 『전후 재일조선인 마이너리티 미디어 해제 및 기사명 색인 1』 박문사

1947.06.30	第9号	06頁01段	外国人登録令の実施を機として 我等の地位を高めよ
1947.08.16	第12号	02頁01段	愈々「外国人登録」実施 我が方の要求全面的に受諾 八月末日迄
1947.08.16	第12号	02頁01段	<声明書>外国人登録書に就いて
1947.08.30	第14号	01頁01段	外国人登録問題に寄せて
1947.08.30	第14号	02頁01段	相互の諒解を得て「登録令」に明るいきざし <声明書>民団、建青、内務共同声明発表
1947.08.30	第14号	02頁03段	登録委員同胞を代表して マ元帥に感謝文
1947.08.30	第14号	02頁04段	涉外局にても発表
1947.09.13	第15号	01頁01段	外国人登録問題解決 マ元帥感謝文 登録委員代表総司令部訪問
1947.09.13	第15号	02頁10段	大阪で登録懇談
1947.09.20	第16号	01頁09段	朝鮮人廿万名登録九月三日現在
1947.09.20	第16号	03頁01段	外国人登録令 条文の不当項目改正成る実施公布迄に若干の時日 (声明書)
1948.02.07	第32号	03頁09段	在日同胞六十万余 外人登録の統計
1948.07.24	第54号	03頁03段	外国人登録者へ 主食配給は必ず本名で 証明書との照合を受けること

「민단신문」에서는 외국인등록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그 문제점 등을 밝히고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미군정 당국과 일본 정부와의 적극적인 교섭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되었다는 점을 알리고 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등록령 실시에 재일조선인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로 구성되어 있다.

민단신문의 기사는 외국인등록령에 대한 다른 민단의 입장을 밝히고, 실시 이후의 문제점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민단과 민청, 내무성 공동으로 협의하여 바람직한 실시 방향을 도출하였고, 재일조선인들은 외국인등록령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주로 게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正しき外国人登録令を要請す 外国人登録令に対する見解

一九四七年五月二日、日本政府勅令第二〇七号及び内務省令第二十八号を以て外国人登録令及び同施行規則が交付された。之に依ると在日朝鮮人も外国人として登録を要請されているが、我々は当然外国人であり、また外国人として登録を為さねばならない。<中略>従来の外国人登録令に依ると朝鮮人を除くとして、朝鮮人を非日本人とか或は第三国人とか勝手なる名

稱をつけて我々朝鮮人を虐待し、圧迫し、侮辱し、未だに外国人としての待遇を為さず、また今度の法令は従来の法令と異り、罰則の規定が嚴重に設けている所から見ても我々朝鮮人を弾圧せんとするに外ならぬ。何故ならば日本帝國主義時代に於て我々朝鮮人にのみ協和會といふ「協和」の美名の下に手帳(登録類似)及びマークをつけさせようとし又、終戦後に於ても朝鮮人を外国人として取扱を為さず、非日本人とか第三人とか云つて、密入者処罰又は經濟活動を阻止せんとする目的を以て大阪警察部に於て強制的に登録制を実施し飽く迄朝鮮人を弾圧し侵略主義軍閥主義の根性を抛棄しないのである。然し我々は外国人登録に反対するのではないが、其の真意が明瞭ならざる今日、この陰謀に應ずるわけにはゆかないのである。茲に於て我々は在日六十萬の同胞は、正しい國際法に基いた外国人待遇を与えてくれるならば喜んで外国人登録を為さんとするものである。⁹⁾

위의 인용문을 살펴보면, 1947년 5월 2일 일본정부 칙령 제207호 및 내무성 지령 제28호로 외국인등록령 및 동 시행규칙이 공포되었음을 알리면서, 재일조선인도 외국인으로서 등록을 요청받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이것을 계기로 재일조선인을 외국인등록령이라는 미명하에 배타적으로 생활권을 제약하고 비일본인이나 제3국인이라고 하여 조선인을 탄압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왜냐하면, 일본강점기 시절에 조선인들에게 협화회 수첩¹⁰⁾으로 통제하고, 종전 후에도 조선인을 외국인으로 대우하지 않고 비일본인, 제3국인 운운하면서 오사카 거주증¹¹⁾으로 경찰 통제를 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외국인등록령은 기존 법령과 달리 벌칙 규정이 엄중해졌다는 점에서 조선인을 탄압하려는 음모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등록령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며 그 진의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음모에는 응할 수는 없으며, 국제법에 기초해서 외국인으로서의 정당한 대우를 해준다면 기꺼이 외국인 등록에 동참하겠다는 점을 밝힌 기사 내용이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외국인등록령 실시에 대해서 민단, 건청과 일본 내무성 조사국 간 합의에 이르는 기사를 볼 수 있다.

9) 「正しき外国人登録令を要請す 外国人登録令に対する見解」『民團新聞』第9号(1947.06.30.)
 10) 협화회 회원장(協和會 會員章). 재일조선인에 대한 통제 신분증을 말하며,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강제 연행된 조선인들에게 휴대를 강요한 협화회 회원증으로 사진, 생년월일, 출생지, 본적, 현주소, 최초 일본 도향연월일, 협화회 소속연월일, 협화회명, 취직연월일, 직업, 취로(就勞)장소, 협화회 인증, 가족란, 기록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1) 1946년 11월 조선인이 제일 많이 거주하는 오사카에서는 오사카부령(大阪府令) ‘조선인등록에 관한 건’이라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성명, 주소, 직업, 본적, 기타 제반사항과 사진, 좌우 검지의 지문을 넣은 ‘조선인등록증’을 발급하였다. 이 조례는 밀항자의 단속이나 콜레라의 전염병 방지 차원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 조선인을 치안대상으로 하는 일본 경찰의 계획이었다.

外国人登録制に就いて

<声明書>在日本朝鮮居留民団は去る五月二日、日本政府に於て公布したる外国人登録の実施に伴ふその在り方について鋭意検討をなしたる結果、当令が正しき国際親善の誠意ある役割をなすべく多くの欠陥を有し、むしろ在留同胞の人権を脅威する悪質な措置として、不当性を指摘し、同令の改正と、円満なる実施につき、日本政府の反省を促し、数次に互り抗議と折衷を重ねた。

同時に、総司令部に対し、我々の真意と見解を陳情し、また、日本の権威ある言論機関等を通じて一般与論の喚起に努めたことは周知の通りである。<中略>我々は、茲に長期に互り外国人登録をめぐる惹起した各種の運動に際し、我々の真意と見解を諒とせられ特に厚意を寄せられた総司令部及び日本政府当局に謝意を表し、また在留同胞各位の今後登録実施に対するご協力あらんことを祈るものである。

一九四七年七月十五日 在日本朝鮮居留民団 外国人登録問題委員会¹²⁾

相互に諒解を得て「登録令」に明るいきざし 民団、建青、内務共同声明を發表

色々の意見の相違によりその実施が長延していた「外国人登録令」は既報の通り我が方の申入れが全面的に受諾され八月廿一日を以て登録が完了される運びとなった。これにつき八月廿日すでに朝日両国家間に一応の諒解を見ていたので民団渉外部長金進中氏、登録問題委員朴魯楨氏、建青企画局長朴根世氏の三名は日本内務省を訪問し最後の打合せを行ひ左の如き共同声明を發して六十万同胞の協力を求めた。<中略>

<声明書>去る五月二日公布された外国人登録令については関係当局と朝鮮人団体との間に相当の見解の相違があったのでその円満な解決のため連合軍総司令部とも協議しつつ検討交渉を継続してきたのであるが、今般これに対してマ司令部と意見の一致を見るに至り正しき外国人登録令を実施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同令は今後外国人としての待遇を確保し、朝日両民族の親善提携を期するためにも、その円満な実施が要望されております。在日朝鮮人各位は、地元の建青、民団の本支部分会と連絡して、一人も漏れなく市町村に登録を申請するように要望いたします。右共同声明致します。

一九四七年八月二十日

内務省調査局 朝鮮建国促進青年同盟 在日本朝鮮居留民団¹³⁾

민단은 지난 5월 2일 일본 정부가 공포한 외국인등록 실시에 대한 협의가 수차례 이루어지는 동안, 외국인등록령에 있어서 재일조선인의 인권을 위협하는 조치에 대해 그 부당성을

12) 「外国人登録制に就いて<声明書>」『民團新聞』第12号(1947.08.16.)

13) 「相互に諒解を得て「登録令」に明るいきざし 民団、建青、内務共同声明を發表」『民團新聞』第14号(1947.08.30.)

지적하고, 등록령의 개정과 더불어 원만한 실시를 위해 일본 정부의 반성을 촉구하고 여러 차례의 항의와 절충을 거듭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연합군 최고사령부에 대해서도 재일조선인들의 진의와 입장에 대해 진정하고 일본의 권위 있는 언론기관 등을 통해서도 일반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외국인 등록 문제로 인해 야기된 조선인들의 진의와 입장에 대해서 연합군 최고사령부와 일본 정부 당국도 충분히 수용했고 외국인으로서의 대우 개선에 대한 당국의 의지를 확인했으며, 조선과 일본의 친선 협력을 기하기 위해서도 재일조선인들은 향후 외국인등록령 실시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취지의 성명서이다.

法務省民事局から「外国人の皆さんへ」と題して次のように発表

外国人の登録は昨年五月から行われているのですが、その後一年以上たった今日でも、全体としてはなおその成績が思わしくありません。とくに登録人口と主要食糧の配給を受ける人口とが一致しないので、法務省では、今回農林省とも相議の上外国人(朝鮮人、台湾人を含みます)が主要食糧の配給を受けるには次のような手続を取って頂くことに致しました。この手続を取らないと来る八月一日以後は、主要食糧の配給を受けることができませんから、外国人登録令の適用を受ける外国人は、間違いなく次の手続を取ってください。

- 一、登録証明書と主要食糧の購入通帳を直接市区町村の事務所にもって行って証明書との照合を受けて下さい。
- 二、登録地と違った市区町村で配給を受けている人は登録地に転入した上で、登録証明書又は国籍証明書と主要食糧の購入通帳との照合を受けて下さい。 <中略>
- 三、本名とは違った氏名で登録をし又は主要食糧の配給を受けている人はこの際本名に登録の変更をし、又配給も本名で受けるようにして下さい。
- 四、外国人登録令の適用は受けませんが、日本の国籍と同時に外国の国籍をもっている人で、主要食糧の外国人加配配給を受けている人(例えばアメリカ生まれの日本人二世)も、その外国の国籍証明書と主要食糧購入通帳及び外国人加配食糧購入通帳を市区町村の事務所にもって行って照合を受けて下さい。

以上の手続きで不明な点がありましたら、市区町村の事務所において尋ねて下さい。なお外国人登録令の適用を受ける人でまだ登録をしてない人がありましたら、この際内住地で登録を申請して下さい。14)

위의 기사는 외국인등록령이 실시된지 1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애당초 기대했던 성과에 이르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식량배급을 통해서도 재일조선인 통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담긴

14) 「外国人登録者へ 主食配給は必ず本名で 証明書との照合を受けること」『民團新聞』第54号(1948.07.24.)

일본 정부의 발표 내용이다. 외국인에 대한 식량배급에 있어서 반드시 본명을 사용할 것과 외국인등록증과 식량배급 통장의 대조를 통한 본인 확인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식량배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민단신문의 이와 같은 기사를 통해서도 민단에서는 일본 정부의 외국인등록령 실시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후술하겠지만 외국인등록령 실시에 대한 대응이 조련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3. 「조련중앙시보(朝連中央時報)」의 관련 기사

<표2> 조련중앙시보의 기사일람

발행일	권호	지면정보	기사제목(원문)
1947.08.16	第1號	01頁03段	日警의 介在反對 外國人登録令에 關하여
1947.08.29	第3號	01頁01段	外國人登録期限目睫에 切迫 交渉爲先 一段落 나면 問題는 繼續이어 交渉 二十七日 午前十時 中總 全國에 電文指令
1947.08.29	第3號	01頁04段	建青·民團의 民族背叛行爲를 糾彈하라 그들의 行動은 이리하다
1947.08.29	第3號	01頁05段	마 司令部가 日本政府에 命令하여 各地方官에 通達한 指令全文
1947.08.29	第3號	01頁08段	原則적으로 拒否치 안는다 朝連의 基本方針
1947.08.29	第3號	01頁08段	絶對反對에서 無條件受諾 欺瞞은 建青輩의 常習的行爲
1947.09.05	第4號	02頁01段	外國人登録問題에 關하여 中總外務部 發表 實施에 이르기까지의 關係當局과의 交渉顛末 一九四七年 八月 廿九日
1947.09.05	第4號	02頁04段	七月 十日 總司令部에 意見書 提出
1947.09.05	第4號	02頁05段	「노보트니」氏와 聲明書 발표를 約一時間
1947.09.05	第4號	02頁06段	外國人登録期限은 八月 卅一日
1947.09.05	第4號	02頁07段	總司令部, 國籍問題에 대하여 日本政府에 指令
1947.09.05	第4號	02頁08段	日政과 覺書 交換
1947.09.05	第4號	02頁09段	外交局長 「시-볼드」氏의 回答文
1947.10.17	第9·10號	04頁06段	登録令을 彈壓의 具に用う 同胞相次いで 披檢 下關事件 其の後 見よ! この陰謀!
1947.10.17	第9·10號	04頁09段	無罪釈放を要求 下關事件に 外務部 動く
1947.11.14	第14號	02頁01段	日警、憲法を 踏みこじる 住居不可侵を 犯す 令狀なし で 寝込みをおそう 広島事件

1947.11.14	第14號	02頁01段	法廷で暴く弾圧の陰謀 ボロを出したしどろもどろの永田証人 下関事件控訴審
1947.11.14	第14號	02頁03段	民族侮蔑の秘密指令 全文 令状なき不法家宅搜索計畫書
1947.11.14	第14號	02頁05段	朝鮮人家宅搜索指令書
1947.11.14	第14號	02頁10段	憲法第三章第三十三條侵犯を指摘し 中総外務部嚴重抗議す
1947.11.14	第14號	02頁10段	全要求遂に無条件受諾 「秘密指令」つきつけやつと屈服
1948.08.06	第46號	03頁03段	登録証悪用は御法度 米穀通帳との照合は今回限り
1948.11.01	第58號	01頁01段	<主張>外国人として正当に遇せよ
1948.11.01	第58號	02頁01段	在日外国人として正当な待遇をせよ 朝連中総 活動を開始
1948.11.21	第62號	02頁01段	職場と正当な外国人待遇を闘争で獲得せよ
1948.12.21	第68號	02頁07段	誤謬を指摘 外国人待遇と四合獲得闘争
1949.02.06	第77號	02頁01段	外国人待遇に籍口財産取得を大制限 同胞在留の特殊性を無視し権利伴わぬ義務のみ強要の反動施策と死闘せよ
1949.02.06	第77號	02頁02段	既得権のはく奪だ 委員会作って闘争開始
1949.02.06	第77號	02頁05段	朝日共同闘争 高崎で大規模で展開中
1949.02.07	號外	01頁01段	外国人財産取得政令案に朝鮮人の特殊性を認めよ 朝連中総闘争を決意
1949.02.07	號外	01頁01段	総司令部にも陳情
1949.02.07	號外	01頁04段	日本における外国人の財産取得に関する総司令部の日本政府宛覚書
1949.02.07	號外	02頁01段	在日同胞の生活権ねらわる間借りにも認可必要 外国人財産取得政令案の正体
1949.02.07	號外	02頁02段	外国人の財産取得政令案<全文>
1949.02.11	第78號	02頁01段	外資政令の適用は生存権のはく奪 総蹶起して反動と闘え
1949.02.11	第78號	02頁01段	都下では闘争開始
1949.02.11	第78號	02頁04段	闘争体制を確立せよ
1949.02.11	第78號	02頁05段	関東地協も蹶起
1949.02.11	第78號	02頁06段	令状もなしにしゅうげき婦女子を殴打発砲 島根県下、日警の暴行
1949.02.11	第78號	02頁08段	理由も示さず投獄 朝連千葉支部の五氏
1949.02.16	第79號	02頁01段	捲き上る外国人財産取得政令 反対闘争の嵐 対策は闘争のみ 東京商工人蹶起大会
1949.02.16	第79號	02頁04段	我等も共に闘わん 日本共産党 風早代議士激励
1949.02.16	第79號	02頁04段	日本政府宛決議文
1949.02.16	第79號	02頁07段	闘争委員会日誌

상기 기사목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조련중앙시보」에서는 외국인등록령이 실시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미군정당국과 일본 정부와의 교섭 과정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신고 있다. 외국인등록령이 실시되면서 발생하게 되는 재일조선인 가택수색과 강제투옥 등 일본 정부의 인권 탄압에 대해서 현장감 있게 고발하고 있다. 그리고 재일조선인에 대한 식량배급 문제, 재산권 제한의 문제 등 조선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조치들이 계속해서 취해지게 된다. 일본 정부가 최고사령부의 각서를 왜곡하여 재일조선인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려는 음모는 60만 재일조선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재일조선인 전체가 일치단결해서 생존권 사수를 위해 조직적으로 투쟁해가는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사들이다.

日警의 介在反對 外國人登錄令에 관하여

外國人登錄令에 關하여는 그 實施期限이 一箇月 延期되어 八月 三十一日까지로 되어 있으나 八月도 그 折半을 닦친 오늘에 이르러도 아직껏 確然한 結論에 到達치 못하고 있으며 요사히에 이르러 各地方에서는 日本政府當局과의 사히에 不要의 摩擦이 發生하고 있다는 報告를 종종 듣게 됨은 매우 遺憾스러운 일이다. 中總의 見解를 말하면 다음과 같다.

- 一, 外國人登錄令에 대한 우리의 態度는 原則的으로는 從來의 發表한 것과 何等의 變함이 없다.
- 二, 各地方下部組織에 있어서는 日警이 介在干涉할여는 空이 있어 滋味스럽지 못한 事態가 發生하고 있으며 同胞들에게 不安과 反對를 불러일으키고 있음에 대하여 中總에서는 지난 七月 十七日 木村 內相, 長井次官 등과 會見한 結果, 充分한 諒解 밑에 再考慮를 約束받았다.
- 三, 마 司令部 關係當局에 대하여서도 우리의 主張을 具申하여 두었다.
- 四, 實施에 當하여는 眞實로 登錄令이 모든 權利를 保障한다는 것을 우리가 納得한 後가 아니면 아니 된다. 萬一 日本政府가 이 같은 우리의 意思를 無視하고 強壓的으로 實施할여는 態度를 取한다면,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過去의 協和會 手帖 또는 大阪居住證과 何等의 差異가 없는 것임을 意味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登錄令에 對하여는 우리는 應하기 困難할 뿐만 아니라 無益한 摩擦이 이러날 것을 豫想하지 아니할 수 없는 바이다.¹⁵⁾

위의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인등록령이 공포된 후 등록에 별다른 진척이 없고 조선인과 행정당국 간의 마찰이 빈번하다고 지적하면서 조련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재일조선인들의 관리에 일본 경찰이 관여하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당국과 교섭하면서 재검토하기로 약속받았다는 점과 연합국 최고사령부에도 재일조선인의 입장을 전달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일본 정부가 재일조선인들의 모든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면 외국인 등록에 응할 수 없다는

15) 「日警의 介在反對 外國人登錄令에 관하여」『朝連中央時報』第1号(1947.08.15.)

것이다. 만일 일본 정부가 조선인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일제강점기의 협회회 수첩이나 해방 후의 오사카 거주증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일본 정부에 대한 불신이 전제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앞에서 기술한 민단의 견해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등록령 실시에 대한 대응 방식에 있어서 민단측이 온건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반면, 조련측은 매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外國人登錄期限目睫에 切迫 交渉爲先 一段落

지난 四月二十八日 公布된 外國人登錄令은 日本政府가 登錄令의 本質을 歪曲하여 公布하였기 때문에 朝聯은 마 司令部에 意見書를 提出하고 그 本質을 明確히 할 것을 要請함과 同時에 또한 實施에 있어서는 朝鮮人에 對하여 外國人으로써의 正當한 處遇를 前提로 하여야 된다는 點을 指摘하여 마 司令部는 勿論, 日本政府 內務當局과도 數次 交渉하여 왔다.

그리하여 어느 程度까지 成果를 보고 있는 中에 지난 八月二十日 建靑, 民團의 民族叛逆의 背叛行爲로 말미암아 支障을 받는 等 曲折을 거듭하게 되었다. 다만, 國籍問題에 있어서 日本政府와 마 司令部의 確實한 言明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朝聯中總 外務部長 姜希守, 次長 金東河, 李錫寅 三氏가 八月二十六日 午前十時 마 司令部 政治局 오프라 法律課長과 會見하고 日本政府의 地方廳名으로 發行된 「講和條約締結時까지 朝鮮人은 日本臣民으로 取扱한다」는 「外國人登錄令解說書」의 撤回를 要求하였다. 이에 對하여 오프라 課長은 政治局長의 위트니 代將, 朝鮮課長 필딩氏, 朝鮮軍政廳 고부少佐와 相議한 다음에 同日 午後四時半 再會見時 確答하겠다고 約束하였다. 約束에 依하여 午後四時半 再會見한 結果 오프라 課長은 「司令部側으로써는 日本政府의 外國人登錄令解說書는 全然 不當하며 朝聯의 主張이 正當하다는 點을 確認하였으므로 卽時 日本內務省의 關係責任者를 불러 在日朝鮮人의 國籍問題는 云云할 것이 아니다라는 指令(後記)¹⁶⁾을 各地方長官에 通達하도록 하였다」고 言明하였다.

이에 이르러 登錄令에 關한 問題는 不滿足하나마 一旦 落着을 지우지 아니하면 아니되게 되었으므로 남은 要求의 貫徹은 實施 以後에 繼續하여 交渉할 것으로 하고 翌二十七日 午前十時, 中總은 電文으로 各地方本部에 向하여 「登錄을 實施하라」는 指令을 發하였다.¹⁷⁾

原則적으로 拒否치 안는다 朝聯의 基本方針

그리고 이 民族的 利益擁護를 目標로 하고 日本政府와 交渉을 繼續하는 一方 지난 六月十六日 朝聯 中總은 다음과 같은 注意事項과 日政當局과의 交渉結果를 併記하여 圓滿 施行하라고 各地方本部에 指示하였다.

16) 「마司令部가 日本政府에 命令하여 各地方官에 通達한 指令全文」『朝連中央時報』第3号(1947.08.29.)

17) 「外國人登錄期限目睫에 切迫 交渉爲先 一段落」『朝連中央時報』第3号(1947.08.29.)

- (一) 國際公法에 의한 差別이 아닌 正當한 것이면 拒否할 理由는 없다.
- (二) 登錄令의 本質에 따라 日本政府는 外國人인 在日朝鮮民族의 모든 權益을 保障할 것
- (三) 申請과 實施方法은 日本政府가 一方的으로 決定하기 前에 朝鮮의 上下組織을 通하여 相互協議할 것
- (四) 登錄令의 本質은 前 協和會 手帳, 大阪居住證 等の 前例에 비추어 不必要한 警察의 干涉介在는 아니할 것
- (五) 所爲 無籍者는 朝聯의 確認한 證明이 있는 限 登錄證을 配付할 것
- (六) 登錄證에 添附할 寫眞도 있는 것을 使用하고 不得已 새로 撮影하는 者는 日本政府가 資料를 配給한 指定業者에서 公正價로 撮影케 할 것 등, 實로 萬遺漏 없는 것이었다.¹⁸⁾

위의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 정부가 공포한 외국인등록령에는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의도하는 외국인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가 심하게 왜곡되어 있으며 과거 제국주의 시대에 조선인들에게 취했던 불손한 태도를 교묘히 은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견을 맥아더 연합군 사령부에 제출하고 수차례에 걸쳐 교섭한 결과를 밝히고 있다. 연합군 최고사령부에서는 포츠담선언¹⁹⁾의 취지에 맞추어 항상 조선인을 정당한 외국인으로서 보호하고 그 편의를 도모하는 제반방책을 수행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이를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조선인을 비밀본인 또는 제3국인이라 칭하여 민족적 우월감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강화조약을 체결할 때까지는 조선인은 일본신민이라는 불손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당한 민족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국인등록령의 문제점을 지적한 조련측의 주장에 대해서 최고사령부측에서는 그 부당성을 인정하고 정당한 처우를 해야 한다는 점을 일본 정부에 지령을 내렸다는 내용이다.

이에 외국인등록령에 대한 교섭 내용이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남아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추후 계속해서 교섭해나가기로 하고 등록령 실시에 일단 협조하겠다는 것으로 일단락을 짓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교섭 과정을 통해서 조련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받아들여져 있는 상황에서 건청과 민단은 일본 내무성과 결탁하여 외국인등록령 무조건 실시라는 등록령 수정안에 동의하여 조선인 동포들을 배반하고 조국 조선의 존엄을 손상시켰다고 비판하는 등 외국인등록령 실시에 대해서 조련측과 민단측의 대립 양상은 격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²⁰⁾

18) 「原則적으로 拒否치 안는다 朝連의 基本方針」『朝連中央時報』第3号(1947.08.29.)

19) 1945년 7월 26일 미국과 영국, 중국이 독일의 포츠담에 모여 일본에게 항복의 조건을 약정하고 선언한 것을 말한다. 그 후 소련도 이에 가입하였다. 같은 해 8월 14일 일본은 이를 수락하고 9월 2일에 일본의 대표가 서명한 항복문서에 그 취지가 표시되었다.

20) 「絶對反對에서 無條件受諾 欺瞞은 建靑輩의 常習의行爲」『朝連中央時報』第3号(1947.08.29.)

外國人登錄問題에 關하여 -實施에 이르기까지의 關係當局과의 交渉顛末-
 日本政府 內務省 調査局長으로부터 所爲 勅令 第二〇七號 及 內務省令 第二八號로서 公布된 外國人登錄令 施行에 對하여 協力을 要請하는 依頼장이 去六月 五日付로 中總에 送達되는 同時에 其後 順次로 內務省 關係官들이 來訪하여 圓滿한 實施를 위한 協力을 要請하였다.
 이에 따라 中總으로서는 第十回 中央委員會에서도 決意된 바와 같이 正當한 外國人登錄令이라면 拒否할 바가 아니라는 見地에서 原則적으로 이것을 受諾하고 實施에 있어서의 우리의 主張을 要求하였다. <中略>
 七月 十日 總司令部에 意見書 提出 <中略>
 「노보트니」氏와 聲明書 발표를 約一時間 <中略>
 外國人登錄期限은 八月 卅一日 (中略)
 總司令部, 國籍問題에 대하여 日本政府에 指令 <中略>
 日政과 覺書 交換 <中略>
 外交局長 「시-볼드」氏의 回答文 <中略>
 이번 登錄令 問題 交渉經過에서는 中總으로서는 活動을 輕視하여 中總交涉經緯의 眞相을 迅速히 同胞 여러분에게 알려드리지 못하고 同時에 一部 反動團體의 欺瞞的 謀略的 策動宣傳을 未然에 防止 못한 것을 깊이 謝過하오니 널리 諒解하시기 바랍니다. (中總外務部 發表 一九四七年 八月 廿九日)²¹⁾

그리고 연합국 최고사령부와 일본 당국과의 모든 교섭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외국인등록령에 대한 조련의 의견을 최고사령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최고사령부 관계자의 성명서 발표, 외국인등록 기한 연장, 국적문제에 대한 최고사령부 관계자의 지령, 일본 정부와의 각서 교환, 최고사령부 관계자의 답신 등 외국인등록령 문제에 대한 일련의 교섭 과정을 상세히 전하고 있다. 그러나 재일조선인이 외국인으로서 정당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향후에도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외국인등록령 실시 과정은 물론이고 실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본 정부의 태도와 행동에 엄정한 비판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교섭 과정에서 있었던 건청과 민단이 보여준 행위에 대해서 반동단체의 기만적이고 모략적인 책동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등록령 실시에 대한 재일조선인들의 우려는 실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로서 그대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登錄令을 彈壓의 具に用う 同胞相次いで 披檢 下関事件その後 見よ! この陰謀

21) 「外國人登錄問題에 關하여 -實施에 이르기까지의 關係當局과의 交渉顛末-」『朝連中央時報』第4号 (1947.09.05.)

九月二十七日山口朝連本部定期大会では、各関係方面に、要旨左の如き決議文を送って下関警察への断乎たる処分を要求した。

- 一、山口県は他の県庁とは諸事情が異なるため、なるべく速やかに登録を完了するよう努力した結果、他の府県より最も成績がよい。にも拘わらず何故山口県に限って、わずか二、三日遅れて登録した者まで、検挙投獄するのか? 軍政庁のハツカー大尉は「九月二十五日までには、検挙してはいけない」と言明しているのに、既報の六名を釈放せぬのは何故か?
- 二、前記六名の中、朝連山口本部副委員長成道伊氏及び李作之君は密航者である。密航者に登録法を適用することは、実に言語道断である。この二名は直ちに密航者として取り扱わねばならない。
- 三、朝連山口本部ではハツカー大尉及び、下関警察公安課長竹内警視との間に、九月二十五日までには絶対に検挙しないという確約を得た。しかるに大阪に移住して、既に大阪で登録した朴賛淳氏を、たまたま登録証を所持していないという理由で、九月二十日検挙投獄したのは、明らかに、下関警察の意識的不法弾圧ではないか。 <以下、省略>²²⁾

日警、憲法を踏みにじる 住居不可侵を犯す 令状なしで寝込みをおそう

<真相>この広島事件は、日警が何等令状を持たずに、広島県下一帯の在日同胞家宅に、寝込みを襲って不法侵入し、家宅捜査を敢行して帝国主義時代の特高²³⁾ぶりを如実に発揮した事件をいうのである。即ち、広島県下においては、去る十月二十七、八両日の未明を期して、谷口県警察部長の指揮のもとに、各警察署、税務署を大々的に動員して、窃盗ならびに経済違反、武器取締という名目の下に、県下に居住する在日同胞の家宅に限って不法侵入し家宅捜査を敢行した。被害家宅は実に五百戸以上に上っている。日警達の暴行を二、三例を挙げて示せば、次の如くである。

- 一、安佐郡古市町の朴重艦(61)氏宅に、午前六時ごろ無断侵入して、病臥にある朴氏老母(82)を足でける等暴行をした。
- 二、同町金四敏(37)氏宅に無条件に侵入し、食事中だから暫く待ってくれという金氏の至極丁寧な懇願にも拘わらず、タンスその他を捜査し、現金三千円を差し押えんとしたが、金氏は無理矢理に取り戻した。
- 三、同町金学永(34)氏宅に、家人は旅行中で留守であるにも関わらず鍵を外して潜入多くの物品を押収した。
- 四、朝連支部にも、二十八日午前六時ごろ、武装警官十数名が裏門から侵入し、役員の不在にも拘わらず、事務書類その他を乱暴にも踏み散らかし、同事務の横側にある朝連支部共同組合の倉庫のカギを外して侵入勝手な捜査をした。²⁴⁾

22) 「登録令を弾壓の具に用う 同胞相次いで披検 下関事件その後」『朝連中央時報』第9・10號(1947.10.17.)

23) 일제강점기의 경찰제도로서 정치와 사상 관계를 다루는 특별고등경찰을 일컫는다.

内務省の新たな「外国人活動調査」を警戒せよ

本紙を通じてしばしば報ずるとおり、最近日本警察の在留同胞に対する不法強圧は日増しに激化し、同胞の生活を脅かしているが、去る三日、静岡県浜松支部において入手した内務省調査局長の名による十一月二十五日付「外国人の活動について」なる秘密指令は計画的な弾圧を示さ

するものとして注目すべきものであるから、ここにその全文を発表する次第である。
むろん、内務省調査局の仕事としては、外国人、殊に朝鮮人を弾圧する計画としてのみ解釈されるべきではないにしても、その内容の具体性と調査の方法を考察するとき、弾圧を憂慮するものが多分に含まれていると見られる節もあるから厳に警戒しなければならない。²⁵⁾

외국인등록령을 실시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일조선인 탄압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기사 내용이다. 아마구치현에서는 경찰을 동원하여 외국인등록이 늦은 재일조선인들을 검거 투옥하는 일이 벌어졌고, 히로시마현에서는 경찰이 영장 없이 조선인 마을의 가택수색을 감행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시즈오카현에서는 재일조선인 활동을 비밀리에 조사하라는 계획적인 탄압을 위한 비밀지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이처럼 재일조선인들에게 불법적으로 자행되는 가택수색과 강제투옥 등은 조선인에 대한 모멸적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일본 정부에 대해 외국인으로서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인권을 보호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게 된다. 이처럼 일본 경찰의 강압적인 탄압은 날로 격화하여 재일조선인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재일조선인 통제는 조선인에 대한 과세 또는 식량 배급의 과정을 통해서도 이루어졌다.

<主張>改正税法をあばく非戦災者税に反対せよ

高物価と高率課税によって、我々の生活が破たんにひんしている時、悪性インフレを助長する税制改正法案と、新たに作られた非戦災者特別税法案が国会に提出されているが、この法案は十一月二十八日既に参議院で可決された。今度国会を通過したこの二つの法案について、それが如何に人民を搾取し、悪性インフレを高進せしめるかその結果大衆生活を如何に破滅に導くかを明確には断じて断固この悪税に対して全国闘争を巻き起こし、我々の生活権を確保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中略>

これは我々朝鮮人について許すべからざる言葉である。我々朝鮮人よりも酷い条件の下で日帝の侵略戦争の具として強制徴兵に、あるいは強制労働に強制献金等を強要されながら敗戦になるや、その敗戦を口実に、何等の善後策をも施さず全部路上に投げ出されたのであって、単な

24) 「日警、憲法を踏みこじる 住居不可侵を犯す 令状なしで寝込みをおそう」『朝連中央時報』第14號 (1947.11.14.)

25) 「内務省の新たな「外国人活動調査」を警戒せよ」『朝連中央時報』第19號(1947.12.19.)

る戦災者でなく、みじめな戦争犠牲者であるのだ。故にこの非戦災者特別税法を我々に適用する事に対して断固一周して日本政府のあくなき野望を粉碎しなければならない。²⁶⁾

登録証悪用は御法度 米穀通帳との照合は今回限り

八月一日午前零時を期して全国的人口調査が行われるのが日政農林省では同日を期して主要食糧購入通帳を持参することになり法務庁、農林省と協議の結果、次のような依頼状でもって第三国人は全部、外国人登録証明書と主要食糧購入通帳を照らせ合わせることにした。

- 一、今回の措置の目的は外国人登録を正確にし、主要食糧の公平な配給を期するにあり、外国人登録令の本質に基づき警察権は絶対に介入させない。
- 二、法務庁としては今後外国人登録令を悪用するようなことはやらない。
- 三、このような調査は今回かぎり、以後は絶対にやらない。
- 四、具体的実施は朝連各地方該当機関と日政各地方当局双方の合意のもとに措置を行う。

以上四項目を合意したので、各地方とも無用の摩擦をさけ、地方的特色を参酌して今回の実施に混乱のないように要望する。²⁷⁾

재일조선인에 대한 통제는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고물가와 고율과세로 인해서 재일조선인의 생활이 파탄에 빠진 상황인데도 세계개정 법안과 비전재자특별세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가결된 것을 지적하고, 이는 재일조선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비전재자(非戰災者)는 태평양전쟁의 피해를 겪지 않은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재일조선인들도 대부분 이에 포함시키고 있다. 조선인들은 일제 침략전쟁의 도구로 강제징병과 강제노동, 강제헌금 등에 시달리다가 내팽개쳐졌으므로 단순한 전재자 정도가 아니라 참혹한 전쟁희생자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 정부의 비전재자특별세법을 조선인들에게 적용하는데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방 이후 한반도의 경제 상황과 식량문제가 좋지 않아지자 다시 일본으로 밀항해서 들어오려는 조선인들도 많았기 때문에 외국인등록증과 식량구입통장의 대조를 통해서 식량 배급을 강화하게 된다. 조련은 이 과정에서 경찰권이 개입하는 등 외국인등록증을 악용하는 불법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조련과 일본 정부당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실시하기로 했다는 기사 내용이다. 위의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조련에서는 일본 정부의 외국인등록령 실시에 대해 경찰권 개입 등의 악용될 여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26) 「<主張>改正税法をあばく 非戦災者税に反対せよ」『朝連中央時報』第18號(1947.12.12.)

27) 「登録証悪用は御法度 米穀通帳との照合は今回限り」『朝連中央時報』第46號(1948.08.06.)

하는 부분은 민단의 대응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²⁸⁾

<主張>外国人として正当に遇せよ

終戦後、日本の歴代内閣が、民主主義の美名に隠れて民主革命へのブレーキ役をつとめ人民の生活を破壊に導き、また在留朝鮮人に対しては「いかなる民族的差別待遇をもなさない」という結構なお名目を唱えながらソ連をはじめ、ポーランド、チェコおよびルーマニア等世界の民主主義諸国家が独立国として認め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第3国人、非日本人などというアイマイな呼称によって政策的に侮辱的差別処遇を強行し、政治的、経済的、社会的、文化的全活動に大きなハンドキャップを押し付けて生活権を剥奪してきたことは、明らかで、その事情はいとまのないほどであるが、わけてもその食糧政策において明らかにその意図をうかがうことができる。<中略>

上述の立場から、在留朝鮮人に対する食糧配給を「日本人同様」の名目的平等から「外国人に対する食糧配給措置」に直ちに切り替え、真に平等で無差別の制度に改正すべきことを、われわれは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人民としてここに改めて要求するものである。²⁹⁾

外国人待遇に籍口財産取得を大制限 同胞在留の特殊性を無視

<在日同胞に一大危機到来>最近外資導入の新規則の発展に伴って旧来の日本政府の「貿易外資委員会」を「外資委員会」に改め、次いで種々の規則が発表されたが、その中在日朝鮮人に一番関連性があり、而も中小商工業者のみならず在日同胞全体の生活権に関する重大な事柄が発生した。

すなわち「朝鮮人や台湾省民の財産権確保については一般外国人同様の取扱いをする」従って一月十四日以後朝鮮人や台湾省民が財産権を保護する場合は外資委員会の許可が必要になった。また一月十四日以前に日本人名義で所有している財産は自分名義で切り替える場合も同様である。すでに政令案は一部新聞に発表されている。その中在日同胞の生活権に重大な関係のある条項を二、三あげると

- 一、朝鮮人及び台湾人は日本国籍を持つものとして当分の政令に適用される。
- 二、許可を受けねばならない財産は(イ)株式株券、事業利益の処分に関する権利、(ロ)土地、工場、事業場と、これに関連する設備、<中略>
- 三、故にわれわれは「朝鮮人は財産取得に関し、他の外国人と同様な取扱いをする」という規定は削除さるべきであり過去数年、数十年にわたって積み上げてきた既得権をあくまで保護し、又理解の如き朝鮮人の歴史的、経済的特殊性を主張しなければならない。
- 四、この闘争は単なる交渉で成功するものではなく大衆的闘争によってのみ成功するものであ

28) 「外国人登録者へ 主食配給は必ず本名で 証明書との照合を受けること」『民團新聞』第54号(1948.07.24.)

29) 「<主張>外国人として正当に遇せよ」『朝連中央時報』第58號(1948.11.01.)

る。特にこの様な一方的形式的な仮面的平等の成果生起する差別的規定の影響によって打撃をこうむる中小商工業者の組織的大衆的闘争によってのみ成功できる。³⁰⁾

일본 정부는 재일조선인에 대해서 어떠한 민족적 차별 대우도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세계 민주주의 모든 국가들이 독립국으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국인, 비일본인이라는 애매한 호칭으로 모욕적 차별 대우를 하고 재일조선인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일조선인에 대한 식량 배급에 있어서도 일본인과 동등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명목상의 평등에서 외국인에 대한 식량 배급 조치로 즉시 전환하여 진정으로 평등하고 차별 없는 제도로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기사이다.

재일조선인에 대한 식량배급 문제, 재산권 제한 문제 등 조선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조치들이 계속해서 취해지게 된다. 특히, 1949년 1월 25일 외자도입에 관한 최고사령부의 각서와 일본 정부의 외자위원회의 「외국인 재산취득에 관한 정령안」이 발표되었는데, 이는 재일조선인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이에 조련을 중심으로 하여 조선인들은 그들의 생존권을 사수하는 차원에서 대대적인 투쟁에 돌입하게 된다. 조련의 기관지인 조련중앙시보 1949년 2월 7일자에 「외국인 재산취득 정령안에 관한 특집」이라는 호위를 발행했고 조련은 재일조선인의 생존권 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서게 된다.³¹⁾ 재일조선인이 일본에서 경영하는 사업은 생활 여건이나 역사적 상황에 비추어 외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외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본 정부가 최고사령부의 각서를 왜곡하여 조선인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려는 음모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재일 60만 동포의 생존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중소상공업자는 물론 조선인 동포 전체가 일치단결해서 일본 정부의 악의적인 의도를 분쇄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최고사령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생존권 사수를 위한 조직적인 투쟁을 이어가게 된다.

4. 나오며

해방 직후 재일조선인은 일본 국적을 갖고 있는 상태로 외국인이 된다. 1947년 외국인등록령에 의해 당시에 남방 양측에 독립 정부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적으로 분류된 것이다. 조선적을 외국인이라 규정할 때와는 달리 제3국인, 비일본인이라는 다른 호칭으로 불리

30) 「外国人待遇に籍口財産取得を大制限」『朝連中央時報』第77號(1949.02.06.)

31) 「外国人財産取得政令案に関する特集」『朝連中央時報』外號(1949.02.07.)

시작한 것이다.

외국인등록령이 실시된 이후, 재일조선인들이 우려했던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조선인들로 인해서 일본 내 치안이 더욱 악화되고 식량 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이에 해방 이전부터 존재하던 일본인의 조선인 멸시 의식은 해방 이후 더욱 강화되었다. 일본 정부는 재일조선인의 경제활동이 일본 경제교란의 주범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유포하고, 그런 인식이 사실인 것처럼 형성되어 가는 사회 분위기가 그 배경에 있었다. 오히려 일본 사회는 패전 직후의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혼란을 감정적으로 반응했으며, 재일조선인이 패전 직후부터 그러한 경제적 곤란과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 모든 사회경제적 혼란과 민중이 겪은 생활고의 구조적 배경은 해방 이전의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착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인은 전전에는 그러한 침략과 착취의 희생자가 되었고 전후에는 재일조선인이 일본의 경제적 위기와 사회 혼란을 초래한 사회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이것은 일본인들의 패전의식과 생존경쟁이 결부된 상황에서 다양한 형태로 가공된 재일조선인의 경제활동에 대해서 의도된 조선인 혐오로 이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재일조선인단체의 기관지인 「민단신문」과 「조련중앙시보」에 실린 외국인등록령 관련 기사를 통해서 외국인등록령 이후 재일조선인이 겪게 되는 사회문제들을 살펴본다. 외국인등록령 실시는 결과적으로 재일조선인의 생존권을 제약하고 조선인을 탄압하는 도구로 삼을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시작되었다. 왜냐하면, 일본강점기 시절에 협화회 수첩으로 조선인들을 통제하고, 종전 후에도 조선인을 오사카 거주증으로 경찰 통제를 했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인등록령에는 법령과 달리 벌칙 규정이 엄중해졌다는 점에서 조선인을 탄압하려는 음모가 담겨져 있었다. 외국인등록령이 실시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일조선인 가택수색과 강제투옥 등 일본 정부의 인권 탄압, 재일조선인에 대한 식량배급 문제, 재산권 제한 문제 등 조선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그때마다 생존권 사수를 위해 조직적으로 투쟁해가는 재일조선인들의 삶의 현장을 이들 마이너리티 신문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민단과 조련의 대처 방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재일조선인의 대처에는 본국의 정치 상황과 연동된 일본 내 조선인 민족 단체의 격한 대립에 숨은 이면을 반영하기도 했다. 이런 분열상에는 강력한 반공주의를 내세우며 우파를 지원하고, 교묘하게 분열을 조장하는 일본 정부와 GHQ의 의도도 함께 작동하고 있었다는 사실 또한 이들 재일조선인 마이너리티 신문의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참고문헌】

김경해(2006)『1948년 한신 교육 투쟁 -재일조선인 민족교육의 원점-』경인문화사
 김태기(1999)「GHQ/SCAP의 對 재일한국인정책」『국제정치논총』제38권 제3호, 한국국제정치학회
 박창건(2018)「GHQ 점령기 일본의 재일조선인 정책」『한국정치외교사논총』제39집 2호, 한국정치외교사학회
 서경식(2012)『역사의 증인 재일조선인』반비
 윤희상(2006)『그들만의 언론』천년의시작
 이경규 외(2018)『전후 재일조선인 마이너리티 미디어 해체 및 기사명 색인 1』박문사
 이경규·이행화(2019)「미군정기 재일조선인 발행 신문의 문화 기사 고찰」『일본근대학연구』제63집, 한국일본근대학회
 이행화·이경규(2019)「미군정기의 재일조선인 관련 신문기사와 이데올로기」『일본근대학연구』제64집, 한국일본근대학회
 타케마에 에이지(2007)『GHQ -연합국 최고사령관 총사령부-』평사리
 「正しき外国人登録令を要請す 外国人登録令に対する見解」『民團新聞』第9号(1947.06.30.)
 「外国人登録制に就て<声明書>」『民團新聞』第12号(1947.08.16.)
 「相互に諒解を得て「登録令」に明るいきざし民団、建青、内務共同声明を發表」『民團新聞』第14号(1947.08.30.)
 「外国人登録者へ 主食配給は必ず本名で 証明書との照合を受けること」『民團新聞』第54号(1948.07.24)
 「日警의 介在反對 外國人登録令에 관하여」『朝連中央時報』第1号(1947.08.15)
 「마司令부가 日本政府에 命令하여 各地方官에 通達한 指令全文」『朝連中央時報』第3号(1947.08.29.)
 「外國人登録期限目睫에 切迫 交渉爲先 一段落」『朝連中央時報』第3号(1947.08.29.)
 「原則적으로 拒否치 안는다 朝連의 基本方針」『朝連中央時報』第3号(1947.08.29.)
 「絶對反對에서 無條件受諾 欺瞞은 建青輩의 常習의 行爲」『朝連中央時報』第3号(1947.08.29.)
 「外國人登録問題에 關하여 -實施에 이르기까지의 關係當局과의 交渉顛末-」『朝連中央時報』第4号(1947.09.05.)
 「登録令を彈壓の具に用う 同胞相次いで披檢 下関事件その後」『朝連中央時報』第9・10號(1947.10.17.)
 「日警、憲法を踏みこじる住居不可侵を犯す 令状なしで寝込みをおそう」『朝連中央時報』第14號(1947.11.14.)
 「<主張>外国人として正當に遇せよ」『朝連中央時報』第58號(1948.11.01.)
 「外国人待遇に籍口財産取得を大制限」『朝連中央時報』第77號(1949.02.06.)

논문투고일 : 2020년 04월 06일
 심사개시일 : 2020년 04월 17일
 1차 수정일 : 2020년 05월 13일
 2차 수정일 : 2020년 05월 18일
 게재확정일 : 2020년 05월 20일

< 要 旨 >

미군정기의 외국인등록령에 관한 신문기사

- 재일조선인 발행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

이행화·이경규

재일조선인단체의 기관지인 「민단신문」와 「조련중앙시보」에 실린 외국인등록령 관련 기사를 통해서 외국인등록령 이후 재일조선인이 겪게 되는 사회문제들을 살펴보고있다. 외국인등록령 실시는 결과적으로 재일조선인의 생존권을 제약하고 조선인을 탄압하는 도구로 삼을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시작되었다. 외국인등록령에는 법령과 달리 별칙 규정이 엄중해졌다는 점에서 조선인을 탄압하려는 음모가 담겨져 있었다. 외국인등록령이 실시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일조선인 가택수색과 강제투옥 등 일본 정부의 인권 탄압, 재일조선인에 대한 식량배급 문제, 재산권 제한 문제 등 조선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그때마다 생존권 사수를 위해 조직적으로 투쟁해가는 재일조선인들의 삶의 현장을 이들 마이너리티 신문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민단과 조련의 대처 방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재일조선인의 대처에는 본국의 정치 상황과 연동된 일본 내 조선인 민족 단체의 격한 대립에 숨은 이면을 반영하기도 했다. 이런 분열상에는 강력한 반공주의를 내세우며 우파를 지원하고, 교묘하게 분열을 조장하는 일본 정부와 GHQ의 의도도 함께 작동하고 있었다는 사실 또한 이들 재일조선인 마이너리티 신문의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Newspaper Articles on the Alien Registration Act published during the U.S. Occupation of Japan

Yi, Haeng-Hwa·Lee, Gyeong-Gyu

The research explores social problems with which zainichi Koreans in postwar Japan had to be confronted as the Alien Registration Act was promulgated in 1952, by analyzing the associated newspaper articles published in the two major zainichi Korean ethnic newspapers respectively - Chosen Soren Chuo Shibo朝連中央時報 andMindan Shimbum民團新聞. This Act eventually came into effect amid fears that it might possibly be used as an effective legal tool on the Japanese side to oppress zainichi Koreans as well as to justify limits on their inalienable right to live: what lay behind its creation has been highly suspected in that the ordinance was allegedly designed to conspire to do so against them, particularly given its penal regulations having become unusually stricter as opposed to what it originally stipulated. Once the decree took effect, it became clear that zainichi Koreans could not help but face up to a series of life-threatening situations to themselves, those running the gamut from the then Japanese government's violation of their human rights performed employing illegal house-search and forced imprisonment to limiting their food rationing and private property rights, for example. \

And it was the zainichi ethnic newspaper articles as mentioned above that could considerably contribute to bringing to the fore how well and desperately zainichi Koreans have then organized themselves in their da-to-day lives to defend their natural rights to live in postwar Japan. Which also revealed simultaneously how differently Chongryon (The General Association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and Mindan (The Korean Residents Union in Japan) have viewed and attended to this issue. It is also true that such an ideological divide distinct in zainichi Koreans' response to it tends to imply in part what was behind all the fierce rivalries and confrontations that then took place between these two major zainichi Korean organizations in affiliation with political situations of their respective native countries. Through the analysis of zainichi ethnic newspaper articles can it be confirmed as well that such ideological schism deep-rooted in zainichi Korean communities manifests that, in fact, both the Japanese government and the GHQ jointly conspired to instigate it, supporting the right-wing groups under the banner of anti-communism.